

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1151호)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3. 3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9. 3. 4
다. 상 정 ·의 결 일 자 : 2009. 3. 11 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이유

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수의 상한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(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, 2008. 11. 5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위원수의 상한선을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조정함 (안 제9조제3항, 제4항)
· 10명 이상 20명 이하 ⇒ 10명 이상 30명 이하
나.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유급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다. 자연스럽지 아니한 표현을 알기 쉬운 문맥으로 바꿈

4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고성군 공고 제2009-39호(2009. 01. 06 ~ 2009. 01. 28)
- 의견제출사항 : 없음

나. 관련법령 및 근거

-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

다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(2008. 11. 5)됨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10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조정하였으며, 대표협의체의 당연직위원인 군수를 부군수로 변경하고, 또한 상근 유급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으로서
- 본 조례안은 2009년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, 상위법령의 규정과 내용에 맞게 일부개정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만, 안제8조 제1항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유급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 조례의 개정을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:

- 문 : 대표협의회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각각 30명 이하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?
- 답 : 대표협의회 및 실무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위원수의 상환선(30명)을 확대 하였습니다.
- 문 : 협의체에 유급간사를 둘 필요성이 있는지요?
- 답 : 사회복지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실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급간사를 두도록 할 계획이며, 또한 인근 시군에도 조례 개정 및 유급간사(남해)를 두고 있으며 상부기관의 편람에서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
- 문 : 협의체 정수가 확대되고 또한 유급간사를 둔다면 사무실이 필요할 것입니다. 사무실 구입과 유급간사 인건비 등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 실정으로 본다면 유급간사를 둔다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것으로 보며 향후 타 시군의 여건을 보고 복지업무의 비중이 많을 경우에 검토함이 좋을까 합니다. 또한, “유급간사를

둔다.” 라고 해도 공무원이 관여해야 하는 업무인 만큼 현행 조례대로 공무원이 간사를 할 수 있도록 합이 좋을 것입니다.

- ◉ 답 : 상위법과 타 시군 조례개정에서도 유급간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조례에 “유급간사를 둔다.”라고 해도 당장에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7. 수정안의 요지

조례안 제8조 제1항 “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. 이 경우 대표협의체에 상근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으며, 대표 협의체의 유급간사는 실무협의체의 간사를 겸임한다.”를 “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. 이 경우 주민생활과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.”로 수정함.

8. 심사결과

- 2009. 3.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

덧붙임 :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

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1인의 간사를 둔다. 이 경우 주민생활과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제9조(간사)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. 이 경우 주민생활과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.	제9조(간사) ①----- ----- -----. ----- 대표협의체에 상근의 유급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대표 협의체의 유급간사는 실무 협의체의 간사를 겸임한다.	제9조(간사) ①----- ----- -----. ----- 주민생활과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.
② (생략)	② (개정안과 같음)	② (개정안과 같음)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」 제1조의3 및 제1조의4에 따른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3항 후단 중 “두며 기능은 【별표2】 와 같다.” 를 “둔다.”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(이하 “대표협의체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 또는 전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·시행·평가에 관한 사항
2.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연계·협력에 필요한 사항
3.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,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
4. 군수가 지역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5.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전의 등

제3조제1항과 제4항 중 “10인 이상 20인” 을 “10명 이상 30명” 으로 하고, 제2항과 제5항 중 “각호의1에” 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며, 제2항 중 “군수, 주민생활과장” 을 “부군수, 주민생활과장” 으로 하고, 제3항 중 “각1인” 을 각 1명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5항에” 를 “제3조제2항부터 제2조 제5항까지에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잔여기간” 을 “남은 기간” 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간사)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1인의 간사를 둔다.

이 경우 주민생활과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.

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.

제14조 중 “예산의 범위 내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로 한다.

별표 1과 별표 2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